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계30423 169	기안용지 (전화: 731-6391)		시행상 특별위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준영구	168 결재 1987. 2. 17 부서장		
시행일자	1987. 1.	7002. 2. 17		
보조기관	부시 장 전경 건설관리국장 326 주택개발과장	업 조 기 관	경기도청 행정과 법무담당관 심사필 (고시안 심사)	
기안제임자	개발1계장 김종찬	반 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1987. 2. 17 서울특별시 시종위원회	
제목	주택개발재개발사업계획변경(가당 제4구역)			
(제 1 안)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 제470호 (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155호 (82.4.26), 364호 (85.8.22), 244호 (86.6.4)로 변경지정된 사당 제4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18호 (75.2.8)로 사업시행인가(도로 계획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887호 (85.12.27)로 사업계획변경결정 (아파트 건립)되었으나 구역추가 (건설부고시 244호 86.6.4)에 따라 도시계획 발발 제5조 제5항및 같은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발참고시안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부. 사업계획변경결정도서 1부				
(제 2 안)				
수신	홍무처장관			

1505-25(2-1)일(1)장
85.9.9 승인

190 mm x 268 mm 인체용지 2급 60g/㎡

제목 관보제재의뢰

1. 저의시 사당 제4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별첨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관보에 게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2부

(제 3 안)

수신 수신청참조

제목 같은건

1. 건설부고시 제470호 (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155호 (82.4.26), 364호 (85.8.22), 244호 (86.6.4)로 변경지정된 산당 제4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18호 (75.2.8)로 사업시행인가(도모 계획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887호 (85.12.27)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내용을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한 것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작구청장은 관계도서를 도시정비과와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일 것

첨부 고시안 사본1부

사업계획결정도서 2부 (위치도)

수신처 동작구청장(주택과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 4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같은건

1. 건설부고시 제470호 (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155호 (82.4.6), 364호 (85.8.22), 244호 (86.6.4)로 변경지정된 사당제4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18호 (75.2.8)로 사업시행인가되었으
며 서울특별시 고시 887호 (35.12.27)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되었으나 구역추가
(건설부고시 244호 (86.6.4))에 따라 별참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결
정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참부 고시문 사본1부

사업계획결정도서 1부. 끝.

1368

1368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고시번호	1986.1.27	제 호
담당자	법제국장	법무담당관
	이	AG

1. 건설부고시 제470호 (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155호 (82/4.26), 364호 (85.8.22), 244호 (86.6.4)로 구역변경 지정되었으며 건설부고시 18호 (75.2.8)로 사업시행인가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887호 (85.12.27)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해당 제4구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사유가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및 같은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1.

서울특별시장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해당 제4주택개량재개발사업
2. 구 역 : 동작구 사당동 산14번지 및 17번지일원
3. 면 적 :

당 초	변 경	비 고
179,120㎡	185,028㎡	건설부고시 제244호 (86.6.4)에 의한 구역추가

4. 공공시설의 위치및 규모

시설명	당 초	변 경
도 토	소토3류1호선동25개노선 5435m	소류3류1호선동 24개노선 4,960.5m ² 예지 / 소류3류16호선 474.5m ² 중 / 347.5m ² 예지 / 소토1류1호선동3개노선 / 454m ² 신설 /

○ 별첨도면표식과 같음 (생략)

5. 토지이용계획

용 도	당 초 면적 m ²	변경 면적 m ²	증 감
계	179,120	185,028 /	증 5,908
백 지	153,915	175,987 /	증22,072
도 토	25,205	3,133 /	감22,072
공 원		5,908 /	증 5,908

6. 건축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건 폐 율	25%이하 /	25%이하 /
용 적 율	260%이하 /	250%이하 /
높 이	51m이하 /	51m이하 /
주된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7. 변경사유

· 당초단독주택건립계획이 공동주택단지로 바뀌었으며, 구역면적의 변경과 인근주민 통행로를 위하여 일부도로 신설

8. 사업계획 변경결정도 (생략)

사업계획결정조서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사당 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2. 구 역 : 동작구 사당동 산14번지 및 17번지일원

3. 면 적

당 초	변 경	비 고
179,120m ²	185,028m ²	건설부고시 제244호 (86.6.4)에 의한 구역추가

4. 토지이용계획

용 도	당초면적(m ²)	변경면적(m ²)	증 감
계	179,120	185,028	증 5,908
택 지	153,915	175,987	증 22,072
도 로	25,205	3,133	감 22,072
공 원	0	5,908	증 5,908

5. 공공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노 선 명	당 초		변 경		구역내 도로면적(m ²)	
	폭(m)	연장(m)	폭(m)	연장(m)	당 초	변 경
소로3류1호선	6	738		폐 지	2,448	0
" 2호선	6	586		"	3,516	0
" 3호선	6	806		"	4,836	0
" 4호선	6	35		"	150	0
" 5호선	6	107		"	402	0
" 6호선	6	52.5		"	315	0
" 7호선	6	25		"	150	0
" 8호선	6	39		"	234	0
" 9호선	6	83.5		"	501	0
" 10호선	6	417.5		"	2,505	0
" 11호선	6	115.5		"	693	0
" 12호	6	228.5		"	1,371	0
" 13호선	6	243.5		"	1,461	0
" 14호선	6	269		"	1,614	0
" 15호선	6	50		"	300	0
" 16호선	6	474.5	6	127	2,223	138
소로4류1호선	4	467		폐 지	0	0
" 2호선	4	76		"	0	0
" 3호선	4	50		"	200	0
" 4호선	4	57		"	228	0
" 5호선	4	111.5		"	446	0
" 6호선	4	145.5		"	582	0
" 7호선	4	132		"	528	0
" 8호선	4	61.5		"	246	0
" 9호선	4	64		"	256	0
소로3류17호선	0	0	6	90	0	540
소로3류18호선	0	0	4	216	0	672
소로1류1호선	0	0	12	148	0	1776
소 계		5,435		581	25,205	3133

나. 공 원

시설명	당 초		변 경	
	위 치	규 모	위 치	규 모
공 원 (현충묘지)	없음		산11번지및 20번지일원	5,908m ²

* 기결정된 (건설부고시 제361호 85.8.22) 공원의 존치

6. 건축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건폐율	25%이하	25%이하
용적율	260%이하	250%이하
높 이	51m이하	51m이하
배 치		별 참

7. 변경사유

- 당초 단독주택건립계획이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바뀌었으며 구역 면적변경과 인근주민통행로를 위하여 일부도로신설